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4.

발 의 자 : 김희정 · 김승수 · 박준태  
서지영 · 김태호 · 배준영  
김도읍 · 김미애 · 강승규  
엄태영 · 김석기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의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으며, 이는 곧 정비사업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져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.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제1항, 제66조제1항 및 제2항).

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용적률의 상한(이하 이 조에서 “법적상한용적률”이라 한다)까지”를 “용적률의 상한(이하 이 조에서 “법적상한용적률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130까지”로 한다.

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0분의 125”를 “100분의 13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1조, 제54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100분의 120”을 “100분의 130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54조제1항, 제6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



0분의 120까지 완화

2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분의 130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